

# 서울고등검찰청

99 검

1999. 8. 6.

수신 김은영

귀하

발신

서울고등검찰청

제목 항고사건 처분통지

검사 이재순



이건희외8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 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.

처	사건번호	1999 불항제 683 호
	연월일	1999 . 8. 6.
분	결과	결정주문 : 항고기각 이유 : 원 검찰청검사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.

비고

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